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0 월 18 일

여 수 시 장

차근기



여수시 조례 제2139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39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2. 상시고용 5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6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2. 상시고용 50명 이상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p>